

【 8 】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7. 3. 5.

제출자 : 양 주 군 수

□ 제안이유

○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양주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양주  
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, 운용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를 통한 노인  
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노인복지증진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 조성(안 제2조)

나.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사회활동 및 지원(안 제3조)

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. (안 제3조)

라. 군수는 매년 운용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양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  
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(안 제11조)

##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양주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양주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조성)** ① 노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서 정한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전입금
2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**제3조 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.

1.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2.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4조 (기금의 관리운용)**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은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.

③ 기금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5억원 이상을 적립하여 2002년부터 적립된 기금을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, 매년 이자의 10퍼센트이상은 기금의 중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양주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내무과장, 재무과장, 가정복지과장, 대한노인회 경기도지부 양주군지회장이 되며, 양주군의 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과 대한노인회경기도지부양주군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한다.

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,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업무를 총괄 한다.

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
**제7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다만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**제8조(위원의 해촉)** 위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하고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해촉된다.

1.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때
2. 당해 위원이 사퇴를 회망한때
3.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한때

**제9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.의결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**제10조(위원회의 회의)**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, 의결한다.

**제11조(기금의 운영계획)**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
2.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
3. 기금의 대상사업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12조(회계관리)**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.

- 1.기금운용관 : 부군수
- 2.분임기금운용관 : 가정복지과장
- 3.기금출납원 : 가정복지계장

-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- ③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으로 한다.

**제13조 (결산 및 보고)**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2월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.

② 군수는 지방재정법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결산 결과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양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수당등)**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)**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반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